

■ 캐나다 - 프라이버시 커미셔너(Privacy Commissioner)

바로가기 ⇒ <http://www.privcom.gc.ca>

메일보내기 ⇒ info@privcom.gc.ca



연방국가인 캐나다는 개인정보보호체제도 연방과 주가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는 순수하게 주 개인정보보호기구의 관할영역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포괄적인 관할권을 가지며, 캐나다 전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올바른 개인정보 처리관행을 확립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기구>

구분	기관명	
연방	연방프라이버시커미셔너	
주	Alberta	정보프라이버시 커미셔너
	British Columbia	정보프라이버시 커미셔너
	Manitoba	옴브즈만
	New Brunswick	옴브즈만
	New Foundland	법무부
	Northwest Territories	정보프라이버시 커미셔너
	Nova Scotia	정보공개 및 프라이버시 심사국
	Nunavut	정보프라이버시 커미셔너
	Ontario	정보프라이버시 커미셔너
	Prince Edward Island	정보프라이버시 커미셔너
	Quebec	정보보호위원회
	Saskatchewan	정보프라이버시 커미셔너
Yukon	옴브즈만 및 정보프라이버시 커미셔너	

1. 커미셔너의 지위

캐나다의 연방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는 1982년 연방프라이버시법(The Federal Privacy Act of 1982)에 의해 1983년도에 설립된 법정기구로서, 여왕을 대신하는 추밀원장(Governor in Council)에 의해 임명된다. 커미셔너의 임기는 7년이며 연임가능하다. 커미셔너는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법정기구이자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로서, 캐나다 상하원에 직접 업무활동을 보고하고 감독을 받는 의회 소속 기구이다. 따라서 예산지원이나 인사관리를 포함한 모든 직무활동에 있어 행정부의 지시·감독으로부터 자유롭다.

2. 관장법률

캐나다의 프라이버시보호체계는 연방과 주 차원으로 나뉘어진다. 따라서 연방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는 두 가지 연방법을 관장하고 있는데, 하나는 1982년 연방프라이버시법이고 다른 하나는 2001년 개인정보보호및전자문서에관한법률(The Personal Informa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of 2001)이다. 연방프라이버시법은 연방공공기관에 의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공개에 관하여 규율하며,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동법에 의하면, 개인은 이러한 접근권이 거부당하였을 때에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및전자문서에관한법률(PIPEDA)은 2000년 4월 의회에 의해 최종 승인된 민간부문에 적용되는 법률로, CSA 국제프라이버시규약(The CSA International Privacy Code)의 내용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공개·보유·처분 등에 관한 10가지 정보보호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동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영역은 상업적 활동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민간단체이다. 현재는 한 주의 경계를 넘어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 예를 들어 통신업·방송업·은행·항공사 등에 대해 적용되나, 2004년 1월부터는 연방차원에서 규제될 수 있는 단체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상업적 활동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민간단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단, 순수하게 주 내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주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충분한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연방법의 적용이 배제될 것이다.

3. 업무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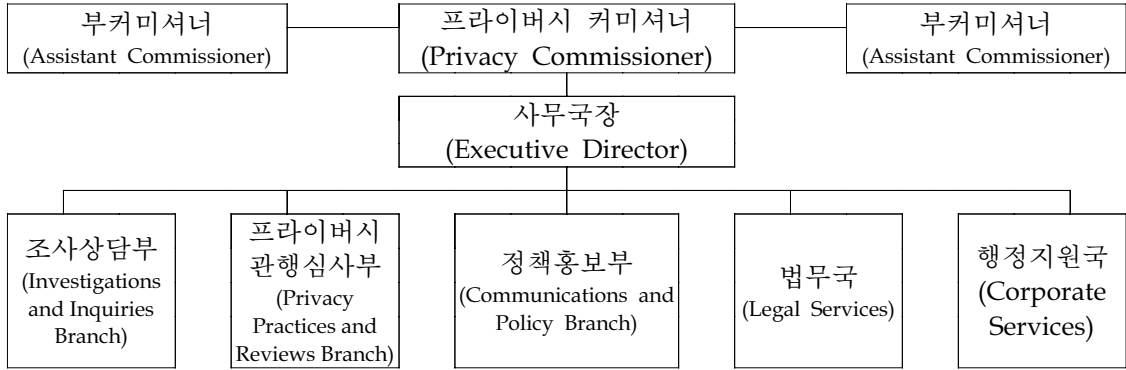
연방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연방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적용되는 두 가지 법률을 관장한다. 따라서 순수하게 주의 관할영역이 아닌 영역과 관련된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인 업무범위를 가지고 있다. 물론 현재까지는 PIPEDA의 법적용이 캐나다 연방 전체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지만, 2004년부터는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연방 프라이버시 커미셔너의 업무범위도 확장된다 할 것이다.

4. 조직구성

연방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는 커미셔너 1인과 2인의 부커미셔너를 비롯하여, 공무원 고용법(The Public Service Employment Act)에 따라 임명된 약 108명(2002. 3월말 기준)의 정규직원이 있다. 이 외에도 프라이버시 커미셔너가 자체적으로 임명하는 기술지원직(임시직)이 있으며, 기술지원직의 보수 및 운영비용은 국가재정원(Treasury Board)의 인가를 얻어 결정된다. 부커미셔너는 주로 민간영역의 개인정보보호법인 PIPEDA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커미셔너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은 총 5개 부서로 이루어져 있다. 조사상담부는 민원접수 및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행하며, 프라이버시 관행심사부는 개인정보 처리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정책홍보부는 각종 프라이버시 관련 기술 및 정책 연구, 대외협력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법무국은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법률자문이나 입법, 정책에 대한 각종 커미셔너의 자문을 지원한다. 그 외 행정지원국은 커미셔너 및 사무

국의 활동과 관련된 각종 행정사항을 총괄하여 지원·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캐나다 연방 프라이버시 커미셔너 조직도>



5. 주요기능

캐나다의 연방 프라이버시 커미셔너의 주된 임무는 첫째, 모든 캐나다 국민들이 자신들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하고 수호함에 있어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캐나다 전지역의 많은 중요한 이해당사자는 물론 캐나다 의회의 신뢰도를 재확립하며, 셋째, 프라이버시법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정보처리자가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임무 수행을 위해 커미셔너는 ① 연방법에 따라 접수된 각종 민원이나 신고사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하여 처리하고, ② 개인정보보호실태를 조사·감사하며, ③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처리관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고시하며, ④ 프라이버시 이슈에 관한 연구·조사를 행하고, ⑤ 캐나다 국민들이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보다 세부적인 커미셔너의 기능 및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라이버시 커미셔너의 주요기능과 업무>

주요기능	세부내용
피해구제	· 각종 불만사항이나 신고 접수 · 자료제출요구, 관계인소환, 현장조사 등을 통한 사실조사 ·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 및 화해유도, 분쟁조정 등을 통한 해결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접근권 행사 거부시 연방행정법원에 소송제기
조사·감독	· 프라이버시 침해여부에 대한 직권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 정보보호원칙 및 법규 준수여부 감독 · 법위반사항 발견시 시정권고
정보제공	· 프라이버시 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질의접수, 처리 ·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심사 시행 및 이에 관한 정보제공
정책 및 입법자문	· 개인정보 관련 법안 심의 및 의견제시 ·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하여 의견제시 및 자문
개인정보보호연구	· 프라이버시 동향 및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
교육홍보	· 언론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기자회견, 회의, 워크샵 등 행사진행 및 웹사이트 관리
유관기관 협력	· 주 개인정보보호기구 및 해외기구와의 협력